#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85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 조인철·장종태·이기헌

박균택 • 이건태 • 이개호

문진석 · 정준호 · 최형두

전진숙 · 위성곤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20~4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3%~43%의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는 반면,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30%~50%,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15%~6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며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이지만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제지원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주요국에 비하여 투자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 24조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공지능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 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인공지능 연구·인력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공지능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 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중 인공지능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 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31일-----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 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

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

가.·나. (생 략)

3. (생략)

② ~ ⑥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

1. (현행과 같음)
2
가
1) (현행과 같음)
2)
2)
<u>2030년 12월 31</u>

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	<u>일</u>
분의 15(중소기업은 100	
분의 25)에 상당하는 금	
<del>ो</del>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